

서울고등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20358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심창주

원고들 승계참가인, 항소인

C시장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심창주

피고, 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 담당변호사 안병준

변 론 종 결 2022. 4. 1.

판 결 선 고 2022. 4. 22.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23459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E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9. 체결한 증여계약은 4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86,085,496원, 원고 B에게 263,914,5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3.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 증여계약의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원고들 승계참가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9. 체결한 증여계약을 4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 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 및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3~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의 배우자 E는 원고 A 소유의 입점비 등 합계 246,995,000원, 원고 B 소유의 수선공사비 등

합계 355,299,000원을 각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그 각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E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것에 대비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무액 각 1억 원의 근저당권 2건이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6억 5,0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억 원을 공제한 4억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86,085,496원,1) 원고 B에게 263,914,504원2)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6면 제6, 7행의 각 “손해배상채권”을 각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고친다.
- 제6면 제9행의 “6억 2,800만 원”을 “6억 5,0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1~12행의 “4억 2,800만 원(= 628,000,000원- 200,000,000원)”을 “4억 5,000만 원(= 6억 5,000만 원- 2억 원)”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3행의 “4억 2,800만 원”을 “4억 5,0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3~14행의 “2020.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2022. 3.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로 고친다.
- 제11면 밑에서 제3행의 “손해배상채권”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및 원고들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서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므로,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발생 당시부터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권리로 볼 수 있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원고)표시 정정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81조이 정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따라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인 E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채권자로서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인지 여부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부가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면 그 주식회사는 관리단의 성격을 함께 가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28267 판결 참조).

나)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전부는 1979. 7. 9. 시장의 발전의 번영육성발전,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원고 A를 설립하고 원고 A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그 소유 점포수에 따라 인수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 A의 설립 이후 매년 2월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원고 A의 주주로 참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운용에 소요되는 예결산안의 승인과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 등 건물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였고, 원고 A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는 이를 집행하여 온 사실, ③ 원고 A의 정관에는 그 목적으로 시장 건물 전체의 관리, 주주 공동소유의 점포의 관리, 운영 및 주주를 위한

유휴 공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등을 들고 있고, 원고 A의 주주 자격을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소유한 자에 한하고 점포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정관 제2조, 제14조), ④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N 등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상고심(대법원 2008다28267)에서 원고 A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상고이유로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판단한 사실, ⑤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그 구성원이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동일하고, 그 대표자도 동일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는 집합건물법 제정 전인 1979. 7. 9. 이 사건 건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장의 번영육성발전, 생활필수품 등의 구매 및 위탁판매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상법상 회사인 반면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점, ②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약 20여 년이 지난 1999. 2.경 및 같은 해 9.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변전실, 기계실 등의 이전으로 지하 1층 공용부분에 약 83평의 여유 공간이 발생하여,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공유점포 등으로 개발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공유점포 등의 보존관리 및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정산, 배분 등을 목적으로 비로소 비법인사단인 원고 B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 및 소송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제소행위, 승계참가신청 등을 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 역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원고 A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들 승계참가인과 동일한 법인격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양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이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민사재판에서 그와 관련 있는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민사재판에 제출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소송목적의 권리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미 확정된 위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선행소송과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선행소송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형, 판사 김재령, 판사 심영진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아파트 K동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평슬래브지붕 14층

지층 496.62㎡

1 내지 4층 각 505.02㎡

5 내지 8층 각 494.10㎡

9층 301.14㎡

10층 216.36㎡

11 내지 14층 각 108.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노원구 I 대 8245.1㎡

2. 서울 노원구 L 대 259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M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84.78㎡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10837.7분의 40. 끝.

1) 186,085,496원{= 4억 5,000만 원× E가 원고 A로부터 횡령한 금액 246,995,000원÷ (E가 원고 A로부터 횡령한 금액 246,995,000원+ E가 원고 B로부터 횡령한 금액 355,299,000원- E의 원고 B에 대한 공탁금액 500만 원)}

2) 263,914,504원{= 4억 5,000만 원× (E가 원고 B로부터 횡령한 금액 355,299,000원- E의 원고 B에 대한 공탁금액 500만 원) ÷(E가 원고 A로부터 횡령한 금액 246,995,000원+ E가 원고 B로부터 횡령한 금액 355,299,000원- E의 원고 B에 대한 공탁금액 500만 원)}